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38호서식]

제 호

수 신 :

제 목 : 의무위반사실 통보

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니,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무위반자	성 명	()		
	주민등록번호	(세)		
	주 소			
의무위반사실	일 시			
	장 소			
	내 용			
적 용 법 조	[□]	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(제63조제1항제2호)		
	[□]	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(제63조제1항제4호)		
	[□]	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(법 제63조제1항제3호)		
	[□]	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(제63조제1항제5호) []사회봉사·수강명령(제36조제1항제4호) []보호관찰(제36조제1항제5호) []감호위탁(제36조제1항제6호) []치료위탁(제36조제1항제7호) []상담위탁(제36조제1항제8호)		
통 보 인 인 적 사 항	성 명		소 속	
	전 화 번 호		직 급	

사법경찰관

별첨첨부

[의무위반사실 내용]